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법·제도 동향

지정감사제 합리적 운영 조치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23.6.12 금융위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 후속 조치

'23.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추진 과제 발표

금융위원회는 '23.6.12.일 新외부감사법 시행('18년~)으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감사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해 기업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습니다.

現 회계제도의 기본 틀 유지 및 비용 대비 투자자 편익이 낮은 부분 조정

회계투명성 확보 및 주요 제도의 시장 수용성 제고

01

지정감사제
합리적 운영

02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03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04

표준감사제
합리성 제고

'23.9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상황 발표

금융위원회는 '23.9.13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정감사 부담 완화 관련 일부 방안의 즉시 시행 등 진행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정감사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 표준감사제 합리성 제고

'23.09.14

즉시 시행

-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법률 개정안 마련 중

-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부담 경감
-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24.01.01

'24.1.1일 이후부터 적용

-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인력 확보

'24.1월부터 적용 추진

-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9.25.) → '24년부터 시행 추진

- 독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조정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 강화

01 지정감사제 합리적 운영

즉시 시행 사항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제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 4가지 방안에 대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24.9.14일 즉시 시행합니다.

①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 발생 시,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예: 3년) 보장

②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합리화

-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 판단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 대신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로 판단

③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합리화

-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 적정 수준으로 조정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감안)

④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 일치 위해 지정 요청 시,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 지정

'23.09.14
즉시 시행

01 지정감사제 합리적 운영

추진사항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제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정감사제 합리적 운영을 위한 다음 2가지 방안을 '24년도 적용 또는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 최소 1명 이상 확보



'24.1.1일
이후 적용

②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한국거래소, '22.9월 설치) 활용 추진
- 업무 절차 등 관련 외감규정 개정안은 9월 중 추가 규정변경예고 예정

(입법예고 진행 중)
'24년부터
시행 추진

02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조정을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제도 개선

1.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 도입시기 조정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한시 유예 ('24년→'29년)

2. 연결 대상 종속기업 기준 명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범위 단계적 확대 및 연결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도	2023	2024	2025	...	2029	2030	2031
현행	2조 ↑	5천억 ↑	5천억 ↓		전체 도입 ('25년~)		
개선	2조 ↑		... 5년 유예 ...		5천억 ↑	5천억 ↓	전체 도입 ('30년~)

(입법예고 진행 중)
'24년부터
시행 추진

②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 자산 5천억 미만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법률 개정안
마련 중

03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감사인 간 품질 경쟁 유도를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완화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직권지정 사유는 '24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①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 사유 폐지·완화
(現 27개 中 14개 사유 완화 · 2개 폐지)

• 감사절차 등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14개)

• '재무기준 미달' 사유 폐지

•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법률 개정안
마련 중

(입법예고 진행 중)
'24년부터
시행 추진

② 주기적 지정제 보완

• 現 주기적 지정제(6+3)를 유지 후 보완 여부 검토

추후 보완
여부 검토

04 표준감사제 합리성 제고

금융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등을 연내 개정하여 '24.1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방안은 '24년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

'24.1월부터
적용 추진

②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의 중립성 강화

-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 축소(現4명→2명) 및 추천기관 변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 금융감독원)

(입법예고 진행 중)
'24년부터
시행 추진

③ 기업-회계법인 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 사항 합의 후 합의 내용 금융감독원 제출 의무화

시행세칙 개정
예정